

# 제 5 차 정기총회

2025. 3. 22 (토)



경제민주주의21  
Economic Democracy 21

# - 목 차 -

## 1. 진행 관련

- 1) 경과보고 ..... 2
- 2) 개회 안내 ..... 5

## 2. 안건

- 1) 2024년 사업성과 및 결산 승인의 건 ..... 7
- 2)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11

## 3. 표결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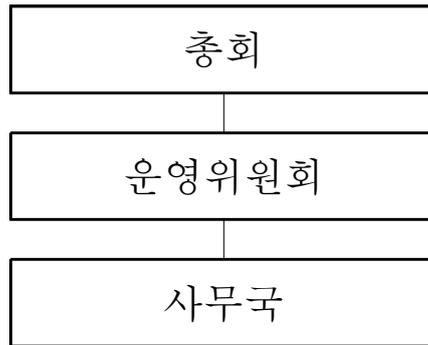
## 4. 기타 .....15

## 5.경제민주주의21 정관 ..... 16



# 1. 경과보고

## 가) 조직 구성



2025년 3월 현재

성명	직책
조혜경	대표
김경율	운영위원
김중휘	운영위원
손혁	운영위원/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김상헌	운영위원/감사
예자선	운영위원/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 나) 주요 연혁

- (2019.12)회원들 간에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새로운 시민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
- (2020.1)경제민주주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감시기구로서 경제민주주의21 설립을 추진
- (2020.2)경제민주주의21 단체 설립 및 활동 개시 준비
- (2020.3.11)경제민주주의21 활동 개시 및 창립 기념 좌담회 개최
- (2020.3.11)김경율 회계사, 초대 대표에 취임
- (2021.11.20)제1차 정기총회 개최
- (2022.2.19)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022.2.2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시)
- (2022.6.30)공익단체 지정

- (2023.3.4)제3차 정기총회 개최
- (2023.12.29)김경을 대표 대표직 사임
- (2024.1.7)조혜경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선출
- (2024.3.23)제4차 정기총회 개최
- (2024.4)금융사기감시센터 설립
- (2024.9)회원 소식지 격월 발간
- (2024.9)회원 독서모임 진행
- (2024.10)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설립
- (2024.12) 조혜경 대표 선임 및 단체 사무실 이전

## 다) 전차 회의 보고

### ▶ 절차

- 공고(이메일/문자메세지/홈페이지): 2024년 3월 4일(토)
- ‘위임장’, ‘서면결의서’ 접수 마감: 2024년 3월 22일(금)
- 개회: 2024년 3월 23일(토) ZOOM 비대면

### ▶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중

---

- 재적회원 91명, 개회 성원 18명, 의결 정족수 9명

### ▶ 전차 정기사원 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4.3.23.(토) 11:00~12:00
2. 회의장소 : 비대면

3. 회의안건 : 2023년도 사업성과 및 결산 승인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4. 출석회원 : 윤선중 이지원 이장규 박경철 신학수 서지석 김혜린 최경달 권재현 이장규  
김대학 황혜주 신원용 서명규 홍준호 김미영 예자선 조혜경 손혁

5. 회의내용

- 개회: 조혜경 운영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원 19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시작됨.
- 안건 보고: 조혜경 운영위원장 (1) 2023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2)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건의 두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이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안건을 논의함.
- 2023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조혜경이 2023년도 운영성과를, 손혁 감사가 회계 감사보고를, 조혜경이 2023년도 사업 실적 및 총평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2024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 조혜경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보고하고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기타 논의: 양대 정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 하에서 시민단체의 정치화가 가속하여 정당정치 중립적 시민단체의 입지가 축소하고 있음. 또한, 경제민주주의 어젠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줄어 경민21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경민21은 시민운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함.
- 폐회: 조혜경이 폐회를 선언함

2024년 3월 23일

운영위원장 조혜경 (인)

운영위원 손혁 (인)

운영위원 예자선 (인)

## 2. 개회 안내

배 분	내 용	
9:00~9:05	인사말	
9:05~9:10	개회 및 등록	
	기록 및 감표 안내	
	보고 및 안전 상정	
9:10~9:30	승인	안전1) 2024년 사업성과 및 결산
	심의	안전2)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9:30~9:55	기타 논의	
9:55~10:00	회의 결과 보고 및 폐회	



# 1. 운영성과표

제 5(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5(당)기		제4(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37,510,200		64,085,000
정기후원수입	35,450,200		56,545,000	
부정기후원수입	2,060,000		7,540,00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37,510,200		64,085,000
IV. 판매비와관리비		54,010,720		49,896,622
직원급여	43,096,965		29,172,200	
상여금	0		2,390,000	
퇴직급여	0		2,621,567	
여비교통비	0		161,000	
통신비	450,546		213,620	
세금과공과금	4,803,280		3,496,900	
감가상각비	247,232		225,800	
지급임차료	2,750,000		6,600,000	
수선비	0		276,000	
회의비	121,800		969,150	
소모품비	712,330		11,000	
지급수수료	1,828,567		3,594,385	
유통제작비	0		165,000	
V. 영업손실		16,500,520		-14,188,378
VI. 영업외수익		37,201		68,248
이자수익	37,201		68,248	
VII. 영업외비용		0		5,000,000
기부금	0		5,000,00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16,463,319		-9,256,626
IX. 법인세등		0		10,480
법인세등	0		10,480	
X. 당기순손실		16,463,319		-9,246,146

## 2. 회계 감사 보고서

### 회계 감사보고서

본 監事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경제민주주의21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및 업무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監事는 경제민주주의21의 회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본 監事の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는 경제민주주의21의 202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상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025년 3월 20일

監事 김상헌



### 3. 사업 실적 및 총평

○ 사업 실적

논평	보도자료	성명서	현안비평	국민제안 민원제기	연구보고서
9	2	1	8	2	2

- (01.03)[논평58호]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01.04)[논평59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01.23)[현안비평] 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
- (01.31)[현안비평] 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 (02.06)[논평60호]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 (02.16)[논평61호]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02.21)[논평제62호] 민주당, 국민 우롱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 즉각 철회하라
- (03.04)[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국민제안
- (03.24)[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검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 (04.08)[논평제63호] 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 굴복해서는 안 돼
- (04.24)[현안비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항소심 재판부에 거는 기대
- (06.05)[논평제64호]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한다
- (08.14)[논평제65호]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 (08.14)[논평제66호] 삼바 분식회계 징계 철회 1심 승소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 (09.30)[연구보고서] 2024 가상자산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 (09.30)[연구보고서] 가상자산 및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인식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10.05)[현안비평] 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 (10.15)[현안비평] 금투세 유예나 폐지나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과세 체계 바로잡아야
- (11.24)[현안비평] 자본소득 전면 과세의 마지막 퍼즐 금투세, 폐기 운명에 처하다
- (12.03)[현안비평] 허상을 좇는 지역화폐 정책사업, 이제는 접어야
- (12.08)[성명서] 불법 계엄 폭거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해야
- (12.28)[현안비평]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없다

○ 총평 및 향후 계획

-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에 관한 논평, 현안비평, 대정부 질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고발, 토론회 등의 활동은 줄었음.
- 금융사기 이슈 및 회계·지배구조 이슈에 특화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산하에 금융사기감시센터(소장 예자선 변호사)와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소장 손혁 교수)를 설립하였음.
- 지난 정기총회에서 공지한 대로 대외 소통 채널로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성화한 결과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음.
- 김경율 대표 사임 이후 단체의 언론 노출이 줄고 일시후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금융사기 대응,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과거 정기총회에서 회원 참여 기회 확대 및 회원 모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024년 9월부터 청년조직 스페이스작당과 공동으로 회원 독서모임을 시작하였음.
- 작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는 독서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개혁 과제와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공부모임으로 승격하였음.
- 후원금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운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원 및 후원금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2025년도 사업 계획서

## I. 사업 목표

1.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 및 정책에 관한 입장 발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금융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고발, 민원 제기, 정책 제언
3. 회계 및 지배구조 평가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4.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 II. 세부 사업 내용

### 1. 경제민주주의 관련 단체 입장 발표 및 공론화 활동

목적 및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경제금융 이슈와 정책현안에 단체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평, 현안비평, 언론기고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공론화함.</li> </ul>
수행 시기	연중 (월 1회 이상)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92,000원</li> </ul>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월 35,000원*12개월=420,000원</li> <li>• 운영위원회 회의비 15,000원*5인*4회=300,000원</li> <li>• 온라인 배포 등 통신비 월 6,000원*12개월=72,000원</li> </ul>

### 2. 금융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목적 및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함.</li> <li>•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금융개혁 과제를 도출하여 공론화함.</li> <li>• 토론회 자료를 대정부 정책옹호 사업에 활용함.</li> </ul>
수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연중 토론회 2회</li> </ul>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000원</li> </ul>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당 1,500,000원*2=3,000,000원</li> </ul>

### 3. 회계지배구조투명성 평가지표 개발

목적 및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차원에서 ESG 공시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경영 도입이 확산하고 있음.</li> <li>• 피평가기관인 기업의 자의적인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불신이 평배한 가운데 ESG 평가가 기업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li> <li>• 이러한 상황에서 ESG 워싱 여부 판별이 어려워 평가등급 결과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어 ESG 워싱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li> <li>• 한국의 경우 ESG 경영공시 및 평가 중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 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li> <li>• 재벌체제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지배구조 평가지표를 개발함.</li> </ul>
수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4월~9월 (6개월)</li> </ul>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50,000원</li> </ul>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500,000원</li> <li>• 회의비 회당 30,000*5인*3회=450,000원</li> <li>• 교통비 1회 100,000원*2인*3회=600,000원</li> <li>• 평가지표 결과 발표회 1,000,000원</li> </ul>

### 4. "작당21 연구회" 회원 공부모임

목적 및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저하 회원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21의 성격, 비전, 활동 방향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경제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회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li> <li>• 경민21 회원과 청년단체 작당 21과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연관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부 모임을 진행함.</li> <li>• 매월 회원에게 연구모임을 공지하는 초대장을 발송하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함.</li> </ul>
수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모임 연 10회+기획회의 2회(1월과 7월)</li> </ul>
예산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0,000원</li> </ul>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당 100,000*12회=1,200,000원</li> </ul>

## 2. 수 지 예 산 서

제 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 5(당)기	
	금 액	
<b>I. 매출액</b>		<b>37,000,000</b>
정기 후원 수입	34,000,000	
부정기 후원 수입	3,000,000	
<b>II. 매출원가</b>		
<b>III. 매출총이익</b>		<b>37,000,000</b>
<b>IV. 판매비와관리비</b>		<b>60,828,000</b>
직원급여	42,000,000	
상여금	0	
퇴직급여	0	
여비교통비	600,000	
통신비	618,000	
세금과공과금	4,800,000	
감가상각비	900,000	
지급임차료	3,960,000	
도서인쇄비	100,000	
회의비	1,950,000	
소모품비	400,000	
지급수수료	5,500,000	
<b>V. 영업이익</b>		<b>-23,828,000</b>
<b>VI. 영업외수익</b>		<b>26,000</b>
이자수익	26,000	
유통운용수익		
<b>VII. 영업외비용</b>		<b>-</b>
<b>VIII. 법인세차감전이익</b>		<b>-23,802,000</b>
<b>IX. 법인세등</b>		<b>9,000</b>
법인세등	9,000	
<b>X. 당기순이익</b>		<b>-23,811,000</b>



# 기타

# 경제민주주의21 정 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제민주주의21(이하 “본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경제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 발표
3.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4.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가입비 및 개인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한다.
2. 특별회원은 특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로 정한다.
- ③ 회원의 가입자격과,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단체의 장(이하 “대표”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납부가 완결된 이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대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먼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후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단체 발간물의 이용
2.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의 참여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회 직담임권을 갖는다.
- ②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3. 감사

- ② 대표는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 ③ 본 단체의 임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본 단체의 최초 임원 선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대표 직무대행자】 ①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대표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자는 대표의 궐위시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② 감사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대표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총 회

제15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전

원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겸임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장이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총회 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6.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겸직한다.

제23조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매 1월,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운영위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3조 【정족수 및 업무】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과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면 또는 문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허용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운영 방법】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회계와 재정

제25조 【수익금】 ① 본 단체의 수익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2. 기부금
  3. 적립된 기금의 운영수익
  4. 사업수익 및 기타 잡수익
- ② 회계연도 종료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③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특별회계】 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예결산의 보고의무】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 ③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 제7장 해 산

제29조 【해산절차】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잔여 재산의 처분】 단체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선임】 본 단체 설립 시 최초 임원은 본 단체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